

교수창업규정

제정 2016.7.

개정 2019.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수창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우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수 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창업'이라 함은 교수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업 경영 및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
- ② '창업관련 활동'이라 함은 소속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등기이사, 지분참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지분참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소유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③ '교수'라 함은 본 대학에 소속한 교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②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 ③ 대학 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의 교수 창업에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창업 및 지원관리

제4조(창업 대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본교에 2년 이상 근속한 교수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
- 2. 2년 미만의 근속 교원이 창업 시 본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규정 제 2조 1호, 2호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임용교수.

제5조(창업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창업 승인 신청서
- 2.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서
- 3. 사업계획서
- 4. 겸직 및 휴직 신청서(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6조(창업 심사) ① 교수 창업 관련 심의업무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창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되 창업 허가(또는 승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승인 취소) 창업 승인을 받은 자(또는 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규정 제 9조에 의한 겸직 또는 휴직을 소정의 기일 내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2. 규정 제 8조에 의한 협약을 소정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3. 규정 제 11조에 의한 기업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4. 창업 신청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창업 승인을 받은 자는 창업 승인서에 명시된 창업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창업승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체결의 지연이 불가피할 때에는 협약체결 마감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협약체결일은 협약체결마감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창업교수의 겸직 및 휴직) ①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교수는 30일 이내에 겸직(휴직 희망자는 휴직신청 포함)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창업 신청 교수의 휴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의 기간중 1년은 연구년 활용 또는 선활용으로 하고, 2년은 무급휴직으로 한다.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간이 종료되는 창업 교수가 연장을 원할 경우, 휴직 신청서 제출 및 승인절차를 통해,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창업 신청 교수의 겸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간이 종료되는 창업교수가 연장을 원할 경우, 겸직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적 기여) ① 교수 창업자는 산학협력단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② 재정적 기여에 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 3장 재정적 기여」에 따른다.

제11조(기업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① 교수 창업(예정)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수 창업(예정)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수 창업(예정)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절차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벤처기업 등록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 지원 및 연수) 교수 창업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대학은 산학협력자원을 활용하여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투자 리스크 관리) 대학은 사전적 리스크 관리로서 경영감독권과 경영참여권을 가지며 사후적 리스크 관리로서 투자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예정, 위약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수 창업자(기업)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교수 창업자는 승인 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 ① 교수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 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산정 및 징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교수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제반 비용 및 관련 절차는 창업보육센터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 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교수 창업자 및 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교수 창업자에게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교원창업지원) ① 대학은 교원 창업기업에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그 밖에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 기준은 우송대학교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창업기업의 자금조성을 위해 대학 내 자본모집 편의제공,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지원 협의 등 자금조달을 간접지원할 수 있다.

④ 대학은 겸직기간 내의 교원창업자에게는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 창업자가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 이용에 관한 권리는 ‘우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재정적 기여

제16조(재정적 기여) 교수 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 및 기술이전을 통해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창업자의 의무) 교수 창업자는 교수창업기업의 매 회계연도 마감 후 부가세 확정 신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교수창업기업 총 매출액의 3%를 창업지원에 관한 서비스 및 기술료로 산학협력단에 납부한다.

제17조(주식 무상증여) ①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당해주식의 주당가치 산정은 액면가, 자본금은 당해기업 발전기금 산정시점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전기금 산정시점 기준은 영업개시일 3년 또는 영업이익 발생후 1년 경과 시점으로 한다.

② 교수창업 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자본금에 (2%-[1.5%×(자본금-1억 5천만원)/자본금])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③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원까지는 양도금액의 2%,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 증여한다.

④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2%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⑤ 교수창업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무상증여분에 대한 주식 증

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당해기업이 주권 미발행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무상증여시 발생하는 무상증여세는 증여자가 부담한다.

⑦ 국내외 증권시장에의 상장 또는 등록 당시 총 발행주식에 대한 1%이상의 주식지분을 산학 협력단에 무상 증여한다.

제18조(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① 교수 창업자가 창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전에 당해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② 당해법인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17조 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③ 위원회에서 당해기업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건을 면제를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 경우.

제19조(기술이전의 실시) ① 교수 창업자는 창업 후 매 1년마다, 기술이전을 통해 학교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단 창업 2년 이내에 교수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장이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 해당 기술의 가격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그 밖의 사항

제20조(지분배분) 창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분 출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통계의 관리 등) 대학의 주관부서는 교원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와 창업기업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그 밖의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6.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수창업에 참여 중인 교수는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인을 받은 후 위 제8조에 의한 협약을 대학과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2019.08.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수창업에 참여 중인 교수는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인을 받은 후 위 제8조에 의한 협약을 대학과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1호]

창업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주소					
창업회사	회사명		업종		소재지	
	자본금			종업원수		
창업기술	특허와 연계된 연구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연구과제의 재원	정부(),정부+민간() 민간(),기타()		연구비		
	기술의명칭			위탁자		
	특허번호			발명자		
				소유자		
창업기간	검칙					
창업기간 중의 복무계획	강의					
	학생지도					
	외부수탁연구					
창업자 지원신청 사항						
창업기간 종료 후 계획						

위와 같이 창업지원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3개년 추정재무제표 1부.
3.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1부.
4. 이력서 1부.

[별지2호]

사 업 계 획 서

201

회 사 명
(예 비 창 업 자)

1. 창업동기 및 회사개요

창 업 동 기	
회 사 개 요	
사 업 화 기 술 개 요	

2. 향후 추진계획

내 용	년도		년도		비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3. 대학투입분 요청내역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사용 면적(평)	
비품 등	
연구기자재	
지적재산권 및 Know-How 등	
참여인력 (연구원, 학생 등)	
기타	

4.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대상업무	보완계획
<p>담당하던 필수과목 강의계획</p>	
<p>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계획</p>	
<p>수행중인 연구 과제 계획</p>	

5. 창업자 및 창업관련활동자 계획

구 분	소 속	신 분	성 명	참여범위	비 고
창업자 (대표자)					
창업관련 활동자 (참여자)					

※ 참여범위에는 임원 등 직책과 참여업무내용을 기재

[별지3호]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연구개발 기술개요	기술명 (특허번호)			
	주요기능			
	특징			
	기존기술과의 차이점	기존 기술의 기능	개발한 기술의 기능	기능비교
개발환경	개발인력			
	개발장비			
	활용자료			
	개발지원 설비 및 교수			

※ 별지 사용 상세히 작성 또는 자체 소개책자 첨부

[별지4호]

예비창업자 이력서

사 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거주지			
		우편번호		전 화	
		휴대폰		E-MAIL Address	
최종학력	기 간	학교명	전 공	기 술 자 격	졸 업 여 부
경 력	기간 (부터-까지)	근무처명	직 위	담 당 업 무	
	~				
	~				
	~				
	~				
	~				
	~				
전문 분야 및 특기 사항					
주요 연구 실적					

※ 별지 사용 상세히 작성 또는 참고자료 첨부

[별지6호]

휴 직 신 청 서

소속 :

직명 :

성명 :

휴직중 연락처 :

<휴직 신청 내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차 안식년 () <input type="checkbox"/> 무급특별 ()	
기 간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 년 월 일	
목 적	<input type="checkbox"/> 연 구 활 동 () <input type="checkbox"/> 기 타 ()	
해외체류시	국 가	
	기 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체 동반여부	
서 약 사 항	1. 약정된 시기에 복귀한다. 2. 복귀후 안식년 휴직 기간의 적어도 2배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본교에서 근무한다. 3. 위의 1, 2 의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는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 또는 계약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휴직종료 후 복직시에는 반드시 휴직중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중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사전에 인사총무팀에 알려 건강보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붙 임 1) 휴직중 활동 계획서(사업계획서) 2) 관련서류

위와 같이 서약하며 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 유	학과장	학장(원장)

우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7호]

창업에 따른 협약서

우송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는 ○○학과 ○○○ 교수(이하 “을”이라 한다)를 교원 창업자로 승인하고, “갑”과 “을”은 창업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분유지) “을”은 창업승인일 이전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며, 창업에 따른 신분 변동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창업기간) 창업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년)까지 로 한다. 다만, ○년의 창업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을”은 “갑”의 교수창업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제3조 (복무) ① “을”은 동 겸직 기간 동안 강의와 학생지도 및 수탁연구에 대하여 창업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② “을”은 제2조의 창업기간 종료에 따른 창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기간동안 “갑”의 창업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지원) ① “갑”은 “을”이 단독 혹은 연대 참여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출원포함)에 대하여 “을”에게 실시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실시권이라 함은 특허법 및 “갑”의 교수창업규정상의 실시권을 말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실시권은 통상실시권으로써 그 부여기간은 “갑”이 승인한 창업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하며 통상 실시권에 따른 등기설정은 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업의 매각, 인수합병, 대표이사 변경 등을 실시할 경우 “을”은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 제1항의 실시권에 대한 검토 및 협약후 실시해야 한다.
⑤ “갑”이 “을”에게 허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으로 인하여 “갑”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갑”의 경제적 부담과 연대참여한 발명자에게 귀속될 발명보상은 “을”이 책임진다.

제5조 (의무) ① “을”은 교수창업규정 제3장 재정적 기여에 의거, “갑”에게 재정적 기여를 실시한다.
② “을”은 창업기업의 총발행주식 산정에 대한 제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 시 “갑”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실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창업일 이후 자본의 변동(유무상증자, 벤처캐피탈 등의 자본참여 등)이 있을 경우 자본변동일 10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각·인수합병 및 대표이사 변경 등의 경우 교수창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교수창업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상기 협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사유발생시 “갑”과 “을”은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첨 부 : “갑”이 “을”에게 실시를 허여한 지식재산권 목록 1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갑”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성 명 : 우송대학교 총장 000 (인)
법인등록번호 : 164131-0000030

“을”

주 소 :
성 명 : 00학과 000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